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5월 16일

군산시 훈령 제407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에너지담당관)”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별표4]

실 적 가 점 기 준 (제11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가점	비 고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유 공	○ 제도·기술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경영수익사업 시행, 업무개선 등으로 세수증대 - 5억원 이상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0 0.8 0.4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	○ 신규 국가사업 발굴 유치(증빙자료 제출, 년 1회 11월말 평정시만 적용)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0 0.8 0.6	
창안제도 우 수	○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자 - 대통령 이상 - 국무총리 - 장 관 - 도 지 사 - 시 장	1.5 1.3 1.2 1.1 1.0	
업무추진 유 공	○ 소관업무 관련 기관표창 수상한 부서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중앙 단위 · 최 우수 · 우 수 - 도 단위 · 최 우수 · 우 수 ○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자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예산 확보(국·도비) ·50억원 이상 ·4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4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1억원이상 ~ 20억원미만	0.8 0.6 0.6 0.4 1.0 0.8 0.6 0.4 0.2	
격무부서 근무 가점	○ 격무부서 근무 - 1년이상 근무자 0.5점 - 1년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 격무부서 : 대중교통계, 택시화물계, 교통지도계, 청소행정계, 보육지원계,	2점한도	

항 목	세 부 항 목	가점	비 고
	장애인복지계, 장애인시설계, 장묘시설계, 도로관리계, 동물복지계 - 가점대상자 :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		
파견 가점	○ 중앙부처, 원거리(전라북도 외 지역) 파견자 (교육 파견 제외) - 6월이상 근무자 0.5점 - 1월 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2점한도	
시정발전	○ 다자녀 출산 - 3자녀 출산시 0.5점, 4자녀 이상 출산시 1점 - 2017.1.1. 이후 출산(입양 포함)에 의해 3자녀 이상인 공무원(부부공무원 각각 부여)	1점 한도	
적극행정 우 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1.0 0.8 0.6	

군산시 공고 제2022-1013호

공 고

「군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화지구 지정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드렌처 등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 기준 완화토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기존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방화지구 내 용도변경 적용 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 당초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나, 방화지구 지정 이전에 사용승인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경우 내화구조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가능토록 기준 완화
 - 용도지역·지구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적합할 것

-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드렌처 설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6월 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 063-454-4302, FAX : 063-454-4299)
- 전자우편 : jmh6417@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전화: 454-43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 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43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화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하고,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p> <p>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u>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39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u></p> <p>1. <u>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43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2 <u>방화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하고,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군산시 공고 제2022-1066호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사전적·확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 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탁자에 대한 전대금지 규정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전화 : 063-454-4362, FAX : 063-454-43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063-454-4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생략)</p> <p>②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p> <p><신설></p>	<p>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p> <p>(현행과 같음)</p> <p>⑥ -----</p> <p>-----</p> <p>-----양도-----.</p> <p>③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다.</p>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2 - 3호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의제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변경없음) : 농촌 중심지의 경쟁력을 살려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향상 및 소재지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 사업내용(변경없음)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너나들이 쉼터, 어울림센터, 통학로정비
 - 나. 지역경관개선 : 가로환경 정비
 - 다.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경영지원 등
4. 사업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일원
5. 사업비(변경없음) : 6,000백만원 (군특 4,200, 지방비 1,800)
6. 사업기간(금회변경) : (당초) 2018 ~ 2021 (변경) 2018 ~ 2023

7. 사업효과(변경없음) : 면 소재지 중심기능 및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가로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농촌발전 거점육성

8.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군산시장

9. 위탁사업자(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10.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금회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당초)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계					7,103	7,103		
1	회현	대정	21-5	임	7,103	7,103	강*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변경)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계					7,103	7,103		
1	회현	대정	21-5	임	6,933	5,346	군산시	
2	회현	대정	22	대	300	300	군산시	
3	회현	대정	22-1	전	540	540	군산시	
4	회현	대정	23	대	2,645	2,645	군산시	

11.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금회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 : “별첨”

12. 기타 문의사항

※ 기본계획 열람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454-589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9)

[별첨]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2	회현면 사무소	면사무소	회현면 대정리 23번지 일원	-	증)8,831	8,831	금 회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2	회현면 사무소 (면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 신설 - A = 8,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면사무소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54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
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13.

군 산 시 장



- 고시내역: 도로명주소 부여 27건, 폐지 9건, 분할 4건, 합병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2. 5.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뜰아름길 4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뜰아름길 42	20120119		20111209	뜰아름 마을 명칭 인용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뜰아름길 4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뜰아름길 44	20220511		20111209	뜰아름 마을 명칭 인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1 길 74 (조촌동)		20220511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사옥로 77 (내흥동)		20220510	건물신축	20191104	예전에 내흥동에 있던 사옥마을 의 명칭으로 부여	
건물번호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3길 16 (삼학동)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3길 18 (삼학동)	2022050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3길 18 (삼학동)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3길 18 (삼학동)	2022050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진장1길 43-17		20220509	건물신축	20100125	부곡리 진장 마을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528-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진장1길 43-15	20220509		20100125	부곡리 진장 마을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1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58-3	2022050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7-1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8-7 (미장동)	20220509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78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2 길 18-1 (조촌동)	2022050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74-14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 안길 19 (조촌동)	20220509		20100125	고유지명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8-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8-12 (미장동)	20220509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195-2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신기길 122	20220509		20100125	영창리 신기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679-3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58 (소룡동)	20220503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랫길 20		20220503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13-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들4 길 34 (개정동)	20220503		20070528	개정에 있는 들 지명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66-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남로 281	20220503		20100125	옥구중심에서 남쪽으로 가는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길 9-1 (문화동)		20220502	건물신축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길 11 (문화동)		20220502	건물신축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성안길 17-7		20220502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82-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모갱이1길 86	20220429		2010012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곶리 763-5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강정2길 51	20220429		20100125	옥곶리 강정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331-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88	20220429		20100125	오성산 옆을 지나가는 709번 지방도로 오성산에서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78-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7 길 3 (수송동)	20220426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돌머리길 57-9		20220426	건물신축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08 (조촌동)		202204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명문카센타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675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460	20220425		20100125	나포면 서포, 주곡, 옥곶리에 십자들이 존재하여 지역명칭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	20220425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550	로 132 (미장동)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134-1	전라북도 군산시 해칠길 107 (산북동)	2022042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6-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7길 15 (미장동)	20220422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27-4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812	20220422		20100125	나포면 서포, 주곡, 옥곤리에 십 자들이 존재하여 지역명칭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176-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영성길 33-9	20220421		20100125	서수리 성자 마을의 옛이름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400	전라북도 군산시 뒷고지 길 24 (산북동)	2022042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북로 139-35 (비응도동)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북로 139-33 (비응도동)	20220419		20090710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명칭 반 영(방조제의 북쪽위치)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북로 139-35 (비응도동)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북로 139-35 (비응도동)	20220210		20090710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명칭 반 영(방조제의 북쪽위치)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691	전라북도 군산시 뒷고지 길 45 (개사동)	202204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691-2	전라북도 군산시 뒷고지 길 43 (개사동)	2022041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25-1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대방1길 1	20220415	건물신축	20070528	마을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479-3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371 (산북동)	20220415		20100125	군산공항으로 관통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161-1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신기길 136-49	20220415	건물신축	20090508	신기마을 통과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249-66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옥삼길 31-1	20220415	건물신축	20070528	금광리 옥삼 마을 소재	

군산시 고시 제2022 - 6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30-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30-21번지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가. 도시계획시설(금강호 유원지)사업
 - 나. 금강호 유원지(상가시설지구3-5) 상가신축공사
 - 상가시설

도면 번호	세부 시설명	세부시설 결정내용				실시계획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3-5 (21)	상가 시설	1,105㎡	331㎡	1,105㎡	지상 4층	1,105㎡	329㎡	329㎡	지상 1층	

- 1동/1층 신축 연면적 329.02㎡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휴게음식점)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명 : 백종희

나. 주소 : 군산시 천변길 16, 다동 301호(경암동, 그린빌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2018. 7. ~ 2022. 7. 31. 변경 2018. 7. ~ 2024. 7.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계제실음 생략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계제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 - 6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4일

군 산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 형	등 급	면 적 (m ²)	유 형	등 급	면 적 (m ²)	
소룡2	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5,230	붕괴위험 지역	D	6,721	지정구역 변경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2. 5. 4.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비고
소룡2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6,721m ²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전라북도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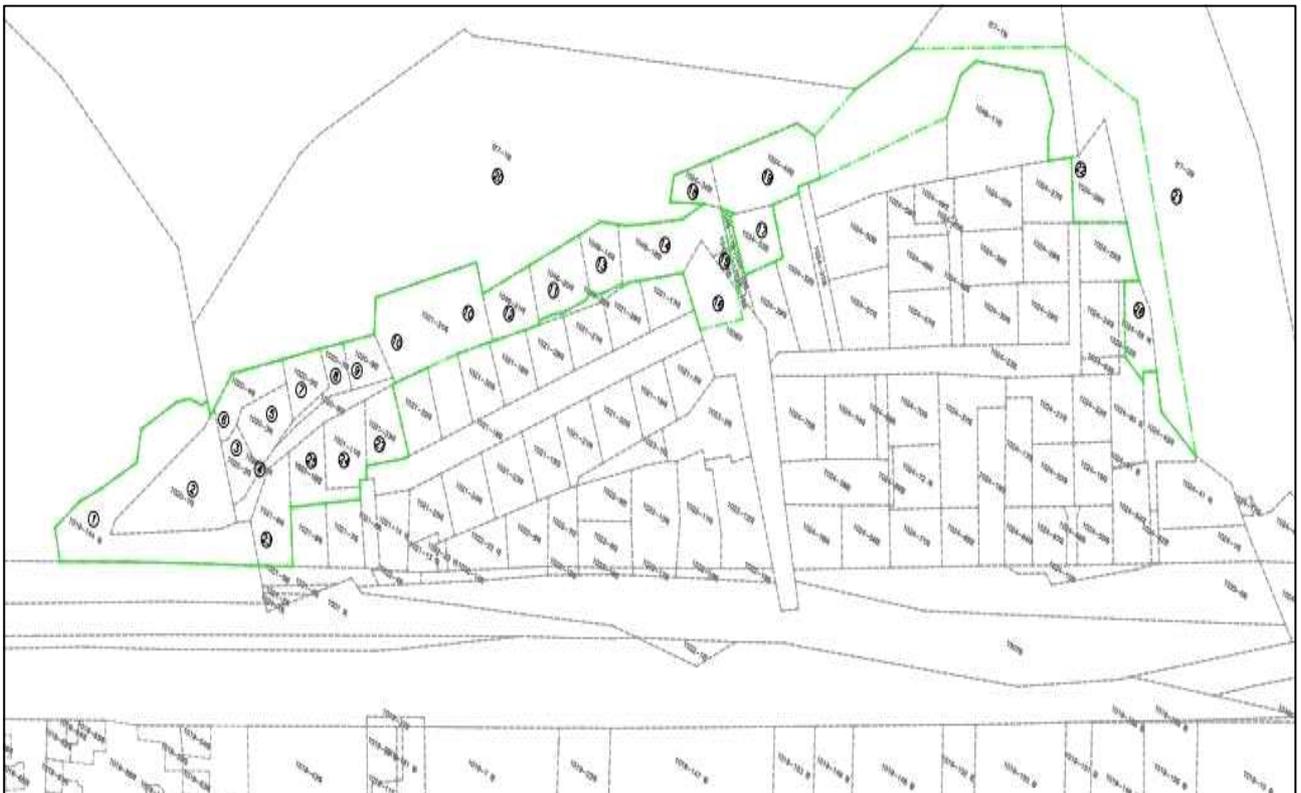
7. 문의처: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2)

-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1. 위치도



2. 지형도면



군산시 고시 제2022 - 67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22-72호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 및 군산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13일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6,604,590	-	456,604,590	100.00	
도 시 지 역	207,398,894	-	207,398,894	45.42	
비 도 시 지 역	249,205,696	-	249,205,696	54.58	
관 리 지 역	128,555,350	증) 9,879	128,565,229	28.16	
보전관리지역	80,314,591	-	80,314,591	17.59	
생산관리지역	19,325,473	-	19,325,473	4.23	
계획관리지역	28,915,286	증) 9,879	28,925,165	6.33	
농 립 지 역	118,773,346	감) 9,879	118,763,467	26.01	
자연환경보전지역	1,877,000	-	1,877,000	0.41	

※ 가령은 전라북도고시 제2020-192호(2020.6.26.)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기준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역	9,879	100% 이하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및 기 조성된 육종연구시설의 로컬푸드 인증을 위해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현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 청사	농업 기술센터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19,627	증 9,879	29,506	군산고94 (09.11.20)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6	공공청사	○ 공공청사 면적 변경 - 19,627㎡ → 29,506㎡ 증)9,879㎡	○ 기 조성된 육종연구시설의 군산시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청사를 확장하고자 함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7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사업
 - 나. 명 칭 : 군산 성산 봉안시설 조성공사(봉안시설 증축)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사 업 면 적 (㎡)		시 설 개 요				비 고
사업면적	39,030.6	기존시설	봉안묘	1,375기	15,632구	16,976구
			봉안탑	12기	1,344구	
		증축시설	봉안당	1동	5000구	5000구
합 계	39,030.6	전체시설	봉안묘	1,375기	15,632구	21,976구
			봉안탑	12기	1,344구	
			봉안당	1동	5000구	

- 건축개요

대지위치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번지(묘지)							
사업면적	39,030.6㎡							
건 축 물	기존			증축			용 도	비 고
	동 별	층 별	면적(㎡)	동 별	층 별	면적(㎡)		
	주1동	지상1층	223.56				사무실	기존
				주2동	지상1층	402.49	묘지관련시설	증축
					지상2층	600.00	묘지관련시설	
					지상3층	600.00	묘지관련시설	
					지상4층	600.00	묘지관련시설	
					옥탑층	47.04	묘지관련시설	
주3동	지상1층	32.00				식당	기존	
	합계	255.56		합계	2,202.49			
건축면적	859.54㎡							
건 폐 율	2.2%							
연 면 적	2,458.05㎡							
용 적 율	6.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성산면 왕골로 239-29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재단법인 성산공원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사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	묘	39,030.6	39,030.6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왕골로 239-29				
	1필지		39,030.6	39,030.6						

7. 관계도서(변경)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7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조촌동 2-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당초 : 군산시 조촌동 2-33번지

변경 : 군산시 조촌동 2-9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나. 명 칭 : 군산시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면적 : 1,500㎡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1,115.24㎡, 연면적 3,317.74㎡

구분	층별	건축물 세부현황		비고
		면적(㎡)	건축물 용도	
1동	지하1층	435.50	보존서고, 기계실, 전기실 등	연면적 제외
	1층	952.95	유아동자료실, 전시/휴게실 등	
	2층	1,061.28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	
	3층	1,046.88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등	
	4층	256.63	공조실	
합계		3,317.74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주택행정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 인가고시일 ~ 2021. 05. 30.

변경 : 인가고시일 ~ 2022. 05.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당초

No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조촌동	2-33	공장 용지	85,561	1,500	페이퍼 코리아(주)	-	수탁자 코리아 신탁(주)

변경

No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조촌동	2-99	공장 용지	26,601	1,500	군산시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 - 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군 산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형	등급	면적 (m ²)	유형	등급	면적 (m ²)	
송풍7	군산시 신평동 987-77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3,824	붕괴위험 지역	D	7,217.8	지정구역 변경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2. 5. 13.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송풍7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7,217.8m ²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전라북도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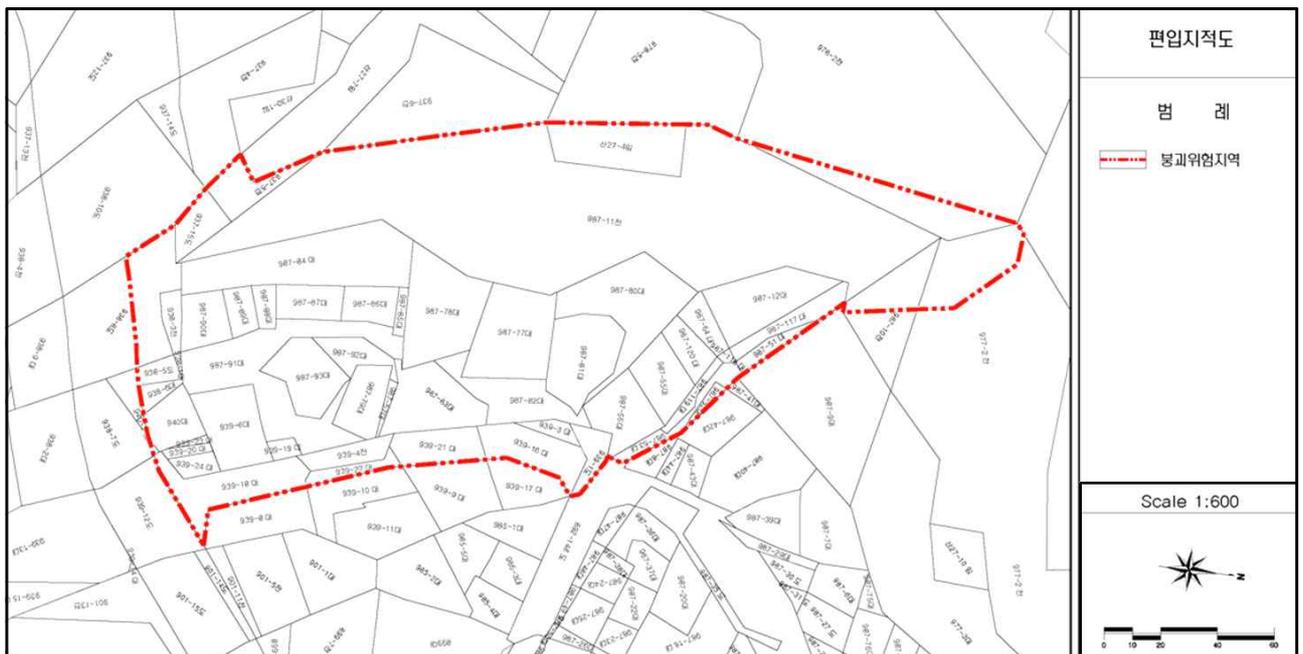
7. 문의처: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4)

-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1. 위치도



2. 지형도면



군산시 공고 제2022 - 1003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어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군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아래와 같이 제공표합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공표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B)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C=A-B)	투표청구 서명인 수 (C/11)
계	내국인	외국인			
225,442	225,067	375	248	225,194	20,473

2022. 5. 3.

군 산 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투표청구 서명인 수

구 분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 (B)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A-B)	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고
	계	주민수	외국인 (영주체류 3년이상)				
계	225,442	225,067	375	248	225,194	20,473	
옥 구 읍	2,939	2,938	1	2	2,937		
옥 산 면	3,828	3,826	2	6	3,822		
회 현 면	2,898	2,895	3	1	2,897		
임 피 면	2,489	2,489	0	3	2,486		
서 수 면	2,350	2,348	2	2	2,348		
대 야 면	4,566	4,565	1	3	4,563		
개 정 면	2,769	2,767	2	4	2,765		
성 산 면	2,667	2,664	3	6	2,661		
나 포 면	2,063	2,062	1	5	2,058		
옥 도 면	3,087	3,083	4	6	3,081		
옥 서 면	2,714	2,714	0	2	2,712		
해 신 동	2,057	2,049	8	2	2,055		
월 명 동	4,771	4,749	22	15	4,756		
삼 학 동	5,097	5,081	16	8	5,089		
신 품 동	6,256	6,249	7	5	6,251		
중 앙 동	3,971	3,958	13	8	3,963		
흥 남 동	10,738	10,722	16	17	10,721		
조 촌 동	19,422	19,397	25	18	19,404		
경 암 동	6,635	6,626	9	5	6,630		
구 암 동	7,116	7,105	11	9	7,107		
개 정 동	2,475	2,471	4	2	2,473		
수 송 동	42,518	42,470	48	32	42,486		
나 운 1 동	10,974	10,957	17	12	10,962		
나 운 2 동	19,517	19,497	20	11	19,506		
나 운 3 동	26,349	26,314	35	33	26,316		
소 룡 동	14,968	14,884	84	15	14,953		
미 성 동	10,208	10,187	21	16	10,192		

군산시 공고 제2022-1055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1.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2. 5. 11.
-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0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열 린 민원과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옥산면 군산시장의인용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옥산면
	옥산면 군산시장의인용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군산시 옥산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군산시 옥산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소룡동 군산시장의인용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소룡동
	소룡동 군산시장의인용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군산시 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군산시 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군산시 공고 제2022 - 1079호

사업인정(노선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및 토지의 출입 공고

우리시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정정내용)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옥구읍	리도	신덕선	208호	상평리 787-13	이곡리 815	1.1	신덕	10	7.0	통행불편해소 지역활성화

- 사업명 :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기간(예정) : 2022. 6. ~ 2025. 1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22. 5. 16. ~ '22. 5. 31.(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5. 16. ~ 2022. 5. 31.(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의 출입허가 등

-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 조서 참조
-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관련자
-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시까지

5.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063-454-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옥구 208호(신덕선) 농어촌도로-

구분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옥구읍 이곡리	815-1	구	456	101	국(농림수 산부)					
2	옥구읍 이곡리	815	구	1,174	461	국(기획재 정부)					
3	옥구읍 이곡리	799-16	답	175	175	군산시					
4	옥구읍 이곡리	799-15	답	234	234	군산시					
5	옥구읍 이곡리	825	구	210	210	국(농림수 산부)					
6	옥구읍 이곡리	799-14	답	63	63	군산시					
7	옥구읍 이곡리	799-13	답	116	116	군산시					
8	옥구읍 이곡리	799-12	답	82	82	최상*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 읍 옥구동로 **				
9	옥구읍 이곡리	799-11	답	102	102	군산시					
10	옥구읍 이곡리	799-10	답	53	53	조풍*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 우동 **				
11	옥구읍 이곡리	799-9	답	62	62	조풍*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 읍 상평리 **				
12	옥구읍 이곡리	817	구	11,334	274	국(농림수 산부)					
13	옥구읍 이곡리	819-1	도	593	45	국(농림수 산부)					
14	옥구읍 이곡리	820	구	1,350	8	국(농림수 산부)					
15	옥구읍 이곡리	819	도	3,834	516	국(농림수 산부)					
16	옥구읍 이곡리	800-15	답	12	12	정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				
17	옥구읍 이곡리	798-15	답	79	79	최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				
18	옥구읍 이곡리	798-2	답	2,707	13	최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				
19	옥구읍 이곡리	816	도	6,224	601	국(농림수 산부)					
20	옥구읍 이곡리	822	구	5,504	119	국(농림수 산부)					
21	옥구읍 이곡리	798-14	답	81	81	최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 읍 신덕안길 **				
22	옥구읍 이곡리	798-1	답	2,571	91	최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				
23	옥구읍 이곡리	780-2	도	99	99	국(농수산 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옥구읍 상평리	817-6	답	563	563	군산시					
25	옥구읍 상평리	818	구	7,174	185	국(농림수 산부)					
26	옥구읍 상평리	817-5	답	232	232	조풍*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				
27	옥구읍 상평리	817-4	답	15	15	조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				
28	옥구읍 상평리	819	도	2,152	38	국(농림수 산부)					
29	옥구읍 상평리	279-3	대	456	4	강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				
30	옥구읍 상평리	279-4	대	83	44	강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				
31	옥구읍 상평리	278-1	대	82	53	강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				
32	옥구읍 상평리	777-15	도	15,268	1259	국(농림부)					
33	옥구읍 상평리	226-3	대	23	2	국(재정경 제원)					
34	옥구읍 상평리	223-3	도	10	10	홍순*	서울 광진구 자양동 **				
35	옥구읍 상평리	226-6	도	26	26	김윤*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 읍 신덕길 **				
36	옥구읍 상평리	223-4	대	14	14	정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37	옥구읍 상평리	223	대	406	174	정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38	옥구읍 상평리	224-2	전	204	204	서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39	옥구읍 상평리	224	전	822	452	서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40	옥구읍 상평리	223-2	답	447	1	홍순*	서울 광진구 자양동 **				
41	옥구읍 상평리	220-1	전	54	54	함인*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				
42	옥구읍 상평리	217-6	전	12	12	송정*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				
43	옥구읍 상평리	217-5	전	30	30	송정*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4	옥구읍 상평리	217-2	전	76	58	송정*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5	옥구읍 상평리	217-7	전	1	1	송정*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				
46	옥구읍 상평리	216-1	전	14	14	강병*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				
47	옥구읍 상평리	216	전	39	39	강병*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				
48	옥구읍 상평리	217-3	전	185	89	송정*	군산시 경장동 **				
49	옥구읍 상평리	217-8	전	5	5	송정*	경장동**				
50	옥구읍 상평리	217-4	전	375	122	송정*	경장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옥구읍 상평리	215	대	565	5	서호*	215				
52	옥구읍 상평리	산5	임	52	5	김영*	주소없음				
53	옥구읍 상평리	산5-1	임	14	14	김영*	주소없음				
54	옥구읍 상평리	산6-1	임	55	55	최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55	옥구읍 상평리	217-1	대	688	330	송정*	군산시 경장동 **				
56	옥구읍 상평리	산3	임	10,909	399	한상*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				
57	옥구읍 상평리	218	전	456	27	전광*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 안길 **				
58	옥구읍 상평리	산1-1	임	20,628	389	김광*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59	옥구읍 상평리	산13-1	임	3,471	4	최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60	옥구읍 상평리	산6	임	1,036	325	최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				
61	옥구읍 상평리	산7	임	1,388	194	이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62	옥구읍 상평리	213	전	1,378	164	유명*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				
63	옥구읍 상평리	213-2	전	196	100	유명*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				
64	옥구읍 상평리	197-1	전	250	195	박말*	204				
65	옥구읍 상평리	213-1	전	92	52	김광*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66	옥구읍 상평리	213-3	전	47	47	김광*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67	옥구읍 상평리	196-3	전	99	79	송정*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				
68	옥구읍 상평리	196-2	전	929	7	송정*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				
69	옥구읍 상평리	198-1	답	900	563	군산시					
70	옥구읍 상평리	198	답	2,135	34	배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나길 **				
71	옥구읍 상평리	194-4	답	331	331	군산시					
72	옥구읍 상평리	194-2	답	585	167	군산시					
73	옥구읍 상평리	796-1	답	1,325	199	배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나길 **				
74	옥구읍 상평리	811	도	1,097	30	국(농수산 부)					
75	옥구읍 상평리	194	답	123	57	군산시					
76	옥구읍 상평리	193-10	답	75	75	군산시					
77	옥구읍 상평리	193-2	답	130	60	군산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8	옥구읍 상평리	193-9	잡	61	61	국(기획재 정부)					
79	옥구읍 상평리	193-1	잡	64	9	국(기획재 정부)					
80	옥구읍 상평리	175	답	27	27	조풍*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				
81	옥구읍 상평리	795-14	답	77	77	최상*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				
82	옥구읍 상평리	산33-4	임	54	38	송금*	군산시 나운동 **				
83	옥구읍 상평리	산33-3	임	269	15	송금*	군산시 나운동 **				
84	옥구읍 상평리	산34-2	임	17	17	김순*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				
85	옥구읍 상평리	산34	임	1,669	11	김순*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				
86	옥구읍 상평리	794-4	답	247	247	최상*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				
87	옥구읍 상평리	813	구	33,992	950	국(농수산 부)					
88	옥구읍 상평리	810	도	262	262	국(농수산 부)					
89	옥구읍 상평리	809	도	700	635	국(농수산 부)					
90	옥구읍 상평리	792-12	답	627	627	고기*	나운동 **				
91	옥구읍 상평리	807	도	1,110	54	국(농수산 부)					
92	옥구읍 상평리	812	도	1,557	11	국(농수산 부)					
93	옥구읍 상평리	790-8	답	840	840	군산시					
94	옥구읍 상평리	805	도	3,622	687	국(농수산 부)					
95	옥구읍 상평리	788-1	답	307	307	군산시					
96	옥구읍 상평리	132-4	철	8,292	185	국(국토교 통부)					
97	옥구읍 상평리	798	도	1,320	70	국(건설교 통부)					
98	옥구읍 상평리	799	구	1,555	91	국(농수산 부)					
99	옥구읍 상평리	787-33	답	631	631	군산시					
100	옥구읍 상평리	787-32	답	12	12	군산시					
101	옥구읍 상평리	787-31	도	831	454	전라북도					
102	옥구읍 상평리	787-30	도	484	484	전라북도					
103	옥구읍 상평리	133-1	도	63	23	국(농수산 부)					
104	옥구읍 상평리	777	도	4,534	414	국(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5	옥구읍 상평리	134-1	도	258	220	국(건설부)					
106	옥구읍 상평리	산52-1	도	1,092	403	전라북도					
107	옥구읍 상평리	134-2	도	102	102	국(재정경제원)					
108	옥구읍 상평리	777-2	도	62	62	국(농수산부)					
109	옥구읍 상평리	112-1	철	5,750	31	국(국토교통부)					
110	옥구읍 상평리	800	도	298	298	국(농수산부)					
111	옥구읍 상평리	132-1	도	17	17	국(건설교통부)					
112	옥구읍 당북리	1000	도	1,537	48	국(농수산부)					
113	옥구읍 당북리	669-1	도	208	37	국(농수산부)					
114	옥구읍 당북리	1043	구	17,634	19	국(농수산부)					
115	옥구읍 당북리	1009-2	도	16	16	국(농림부)					
116	옥구읍 당북리	산148-1	도	96	67	전라북도					

297mm×210mm[백상지 80g/㎡]

군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5월 16일

군산시 예규 제43호

군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로서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시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시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시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4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7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획의 인가
8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9	마을정비 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0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2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 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3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4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6	물류단지 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9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 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0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제11조의 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21	역세권 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4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5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6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8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0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산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	--------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input type="checkbox"/> 직무 대리자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재배정 <input type="checkbox"/> 전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신청 사유	
-------	--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군산시장 귀중

채용대상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신고내용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년 월 일
군산시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